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71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20다3909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나7171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진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 종결 2020. 3. 19.

판결 선고 2020. 4. 9.

제 1 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소4148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29.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는 2016. 12. 20. 7: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왼쪽으로 넘어져 차도로 굴러 떨어졌다. 그 직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속 버스 기사 F이 운전하는 E 소유 G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한다) 오른쪽 앞바퀴가 굴러 떨어진 피고의 오른발을 역과하여 피고는 우측 발목 양측폐쇄성 복사골절상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는 E과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피고의 공제금지급청구에 따라 2017. 5. 26.경부터 2018. 5. 9.경까지 사이에 합계20,001,8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한편, E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가단62429호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E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에 F의 과실이나 이 사건 버스의 기능상 하자 등이 있지 않았다고 보아 2018. 9. 7. E 전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8. 9. 28. 확정되었다.

(4) 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제금지급청구권이 없음에도{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지만,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금액 상당의 치료비를 지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와 같은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1,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위 20,001,800원에 대하여 마지막 공제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5. 10.부터의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소를 제기한 때'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며(대법원 2014. 2.27. 선고 2013다89006 판결 참조), 또한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부터 위 위 20,001,800원의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이행권고결정 등본)이 송달된 때인 2019. 1. 29.부터 악의로 의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1,8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이행권고결정 등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상당 금원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민법 제744조가 정하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있어서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비채변제의 급부가 수령자에게 그대로 보유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2007다67654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공제금지급의무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고의 지급청구에 따라 F의 과실이 100%라는 전제하에 치료비를 지급한 것인 사정, ②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F의 과실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의 과실만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위 95다4937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급한 금전을 피고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법감정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경승, 판사 박상준, 판사 인형준